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신상정보 침해와 언론보도의 영향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산업정책팀

I. 서론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침해의 문제는 이른바 ‘신상털기’에서 시작한다. 말 그대로 ‘신상털기’는 특정 사건, 사고를 통해 알려진 사람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네티즌들이 무차별적으로 샅샅이 조사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행해지는 집단 폭력의 형태와 닮아 있다. 자신의 개인 정보를 거리낌 없이 업로드 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신상털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순식간에 정보가 퍼져나가는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신상털기’의 결과를 견줄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개인의 신상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행태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TV나 신문 등 이른바 전통적 미디어의 경우에도 사건, 사고와 연루된 개인들의 사진, 개인적 성향, 직장, 가족관계, 병력, 전과기록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정보의

공개는 그 범위나 강도가 훨씬 넓고 강하며 익명성의 뒤에 숨어 사실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주장이 덧붙여져 확산됨으로써 그 결과가 ‘인격살인’의 수준을 넘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등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수동적인 보도행태 역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취재의 기본인 사실 확인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사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사건과 연관된 개인의 피해를 더욱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와 언론보도가 결합하여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 확산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보도에 있어 소셜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 신상정보 노출 사례와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 즉 프라이버시 문제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와 이러한 상황이 언

론보도와 맞물렸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소셜미디어 관련 개인 신상정보 노출과 피해 사례

1.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

지난 2월에 일어난 이른바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제기된 하나의 ‘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기에 어떻게 확산되고 개인의 신상이 어떻게 폭로되며, 여기에 언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 임신부가 유명 샵브샵브 전문 체인점인 채선당의 한 가맹점에 들러 식사를 하다가 불친절한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는데, 싸움이 커져 몸싸움으로 번졌으며, 이때 임신부가 자신이 임신 6개월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자신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호소하면서 시작했다.

이 글을 올린 임신부는 “... 아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고... 한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그 아줌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을 휘둘렀습니다...”(조선닷컴, 2012. 2. 20)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네티즌들의 모성을 자극했고,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는 독려글을 남기면서 사건은 SNS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져 비판이 쏟아지자 채선당 측은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다툼이 일어난 가맹점에 대해 폐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다.

여기까지가 사건 발생의 초기 상황이다. 임신부를 발길질한 당사자로 몰린 종업원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발로 차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그의 주장은 네티즌의 거센 비난에 묻혔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경찰 트위터 ‘또또 알림이’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인수받아 조사할 것임을 천명했는데, 이 상황에서 해당 임신부는 경찰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고 채선당의 임직원들이 사과를 하는 등 신속히 사건이 정리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듯 했으나, 이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어 채선당에 대한 불매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유명 연예인이 과거 채선당에서 겪은 불친절한 상황을 트위터에 언급하면서 사건은 더욱더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음식점 안에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주장이 과장됐고, 특히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찼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상황이 역전되자 사건의 주인공인 임신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임신부에 대한 소위 ‘산상털기’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은 결국 임신부와 종업원 둘 모두 상해에 대한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음식점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고, 사건이 벌어진 가맹점은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인터넷 상에서 보여진 사건의 개요를 그대로 받아쓰는데 그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먼저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이후 포털과 일간 신문, 방송매체들이 사건을 잇달아 보도하는 등 뜨거운 주목을 받았으나, 사건 초기 어느 매체도 종업원의 주장과 임신부의 주장을 균형 있게 보도하지 않았고, 특히 직접 취재를 나서 경찰과 함께 음식점 안의 CCTV등을 확인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국물녀 사건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이 지나자마자, 이번에는 일명 ‘국물녀’가 온라인 상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국물녀 사건은 채선당 임신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사실 확인이 되기도 전에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후 언론매체에도 소개되면서 ‘국물녀’로 지목된 당사자가 큰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사건은 한 아이의 엄마가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내용은 한 식당에서 자신의 아이와 식사를 하던 중 물을 가지러 간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 가보니 아이가 뜨거운 국물에 얼굴을 데어 쓰러진 상태였고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도 손을 다쳤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그냥 떠났다는 고발이었다. 이 고발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자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그대로 기사화되었고, 결국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여성이 경찰에 출두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CCTV 판독 결과가 나오자 채선당 임신부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CCTV에는 50대 여성이 국물을 아이의 얼굴에 쏟은 게 아니라 식당에서 국물을 떠 오던 이 여성을 향해 아이가 돌진해 피할 틈도 없이 부딪혔으며 이후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이 여성이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식당 관계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CCTV가 공개된 이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네티즌들의 비난의 화살은 아이의 엄마에게로 쏠렸다.

이 사건도 인터넷에 오른 한 개인의 글이 발단이 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었으며, 언론매체가 되면서 사회이슈화 되었다. 곧바로 오해가 풀리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범죄자로 몰려 기자회견까지 한 평범한 주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언론에서 보도할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이 여성의 입장도 파악하고, 다른 정황들도 파악해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에도 그러한 보도를 찾기 어

려웠다는 점이 또한 아쉬움으로 남았다.

3. 택시 막말녀 사건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택시 막말녀’ 역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개인의 글에서 시작했는데, ‘막말녀’로 불린 당사자에 대한 극심한 개인 ‘신상털기’가 자행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건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택시를 탄 한 여성이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했으며, 이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동영상은 이 여성이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여과 없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곧바로 동영상 속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이 여성의 이름과 나이, 직업, 근무지, 연락처 등이 모두 나타나 있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게시자는 일부 정보를 삭제하기도 했으나 이미 SNS 등을 통해 확산된 이후였다. 결국 사건은 글을 올린 택시기사의 자녀가 ‘신상털기’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사건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 올라오자마자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곧바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파헤치기와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4.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 사건

고(故) 송지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의 자살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남겨둔 개인적인 말들이 기사화되었을 때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는 한 프로 야구 선수와 관련된 개인적인 연애사가 인터넷에 나돌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한 차례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오해를 받아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결국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자살의 원인으로 인터넷 상에 퍼진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꼽혔으며, 실제로 자택에서 발견된 문서에 "... 트위터 한 자가 기자들의 먹잇감이 될 줄은 몰랐다"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미디어오늘, 2011. 5. 25).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가 죽은 이후에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고인의 프라이버시가 언론에 의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은 △ 자살자의 이름,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 경위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을 것 △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 △ 흥미유발이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다루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미디어스, 2011. 5. 23). 그러나 당시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면서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방법, 경위 등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특히 모 스포츠 신문은 자살 직후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의 아버지를 인터뷰해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내보내는 행위까지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트위터의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미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는 것은 대중이 볼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이고, 이미 트위터는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볼 때,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가 남긴 문서에서처럼 자신이 써 놓은 개인적인 글들이 기자들에게 노출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트위터라는 플랫폼의 특징과는 관계 없이 언론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트위터 내용을 기사를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더구나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가 남긴 이전 트위터 내용까지 기사화 하는 등 '알 권리'가 아닌 흥미위주의 보도에 또

한번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비판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5. 중학교 여교사 사건

2010년 10월에 발생한 일명 '중학교 여교사' 사건은 30대인 모 중학교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인터넷에 알려진 발단은 조사를 담당할 관할 경찰서, 즉 수사기관의 공보(公報)활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승준, 2011). 관할 경찰서의 보도자료가 나오자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는데, 수사내용 중의 세부 내용, 즉 중학교의 위치와 여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정보가 기사를 통해 제공되자 이 여교사에 대한 '신상털기'가 시작되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보호가 경찰과 언론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출된 정보로 인해 네티즌들은 쉽게 이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교사와 학생들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었다. 이후 여교사가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교사와 성관계를 맺은 제자 뿐만 아니라 여교사 남편의 직업과 이름, 자녀들의 사진까지 인터넷에 유출되는 등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고, 사건과 상관없는 가족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례인데, 범죄자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 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난이 유독 거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의 경우 언론에서 얼굴, 즉 초상(肖像)을 공개하는 사례가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검거 이후로부터 빈번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학교 여교사의 경우는 흉악범도 아니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범죄 혐의를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승준(2011)에 의하면,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피해 남학생이 13세 미만의 부녀가 아니며

서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 305조)의 객체도 아니며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밝혀졌으므로 여교사에게 위계나 위력을 통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즉, 흉악범 등의 범죄자들에 대한 초상 공개가 관행이라도 이 여교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여교사 본인과 가족에게 자행된 신상정보 노출과 비난은 빛나간 공명심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6.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오래된 사건이지만 2004년 12월에 발생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야말로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폭행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발단은 역시 수사기관의 공보 활동에서 비롯되었는데, 울산지방경찰청의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역 언론사들이 보도했으며, 사건은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이승준, 2011). 이 사건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이 당시 유행했던 미니홈피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있던 개인 정보가 일반에게 그대로 공개된 것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미니홈피를 이용,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언론보도 역시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의하면(2012. 8.22), 대다수의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잘못된 보도를 했었고, 지금도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이 사건을 일부 언론들은 ‘밀양 여중생 자매 성폭행’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자매 성폭행’으로 보도됨으로써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언론사에 의해 언론에서 기사를 쓰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구(區) 단 위까지 명시하고 나이와 성씨를 그대로 공개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가족의 인권까지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기도 했다(노컷뉴스, 2004, 12.7).

III. 소셜미디어 상에서 빈번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의 배경

1. 소셜미디어 환경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식의 변화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는 ‘사교’를 뜻하는 ‘social’과 ‘media’의 결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인맥 쌓기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교환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흔히 매스미디어와 대칭점에 있는 미디어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소셜미디어 역시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며, 오히려 생각 없는 대중이 아닌 특정 의도를 가진 사람들, 혹은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인맥을 형성하고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용해 거대한 담론을 형성,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터넷 세대의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바로 개인의 신상정보라는 점이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본인의 정보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오테원·유지연, 2011), 이러한 정체성이야말로 인맥 쌓기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본인을 돋보이게 만드는 신상정보를 많이 제공할수록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신의 색을 강하게 내보일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개인 신상정보가 많이 노출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인기는 나날이 고공행

진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는 달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결국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일정 수준의 개인 신상정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맥을 쌓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도록 조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은 결국 '선택'인 것이 되어버린다. 달리 말하면 프라이버시는 개인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진 것이다. 즉,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information self-determination)¹⁾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오태원 · 유지원, 2011).

또 다른 이유로 심리적 측면에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Cialdini, 1993), '남도 하는데 뭐 어쩔까' 하는 심리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노출하는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남들도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면서 자기결정이 혹시 원인이 될지도 모를 피해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방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

떤 행위를 할 당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망각하는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Brin, 1998).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 타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친한 주위사람들과의 인맥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Brin, 1998). 즉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들이 적절히 비밀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그 기대와 신뢰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변화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 상에 올라온 정보는 해당 게시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위해 써도 좋다고 인정한 정보이며, 그 자신이 선택을 내렸으므로 그에 따른 결과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규원과 윤현석(2011)은 다음의 이유로 이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보사회에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공동체, 집단 형성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라는 주장이다. 소셜미디어 환경에 섞이고 싶으면 개인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데, 단순히 말해서 그것이 불안하면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표〉 소셜미디어 등장 이전과 이후의 프라이버시 관련 개념의 변화

구분	소셜미디어 이전	소셜미디어 이후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개인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개인이 직접 제공한 정보에 한함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전달 및 공유 기능(예시: 트위터의 리트윗)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이 가입한 커뮤니티, 해당 게시판 등 일부분에 한정되어 공유됨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과 소셜미디어의 추천 기능(예시: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그리고 인터넷 검색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하여 사생활 설계 및 내용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자기정보의 관리 통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한정함으로써 관리,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함	소셜미디어의 네트워크성은 어떠한 정보가 누구누구에게 전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관리와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출처: 오태원 · 유지원 (2011), p.34.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정보의 수집, 보유, 사용, 제공 등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주체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장규원 · 윤현석, 2011, p. 112).

것은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라는 위협으로도 들릴 수 있고, 따라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로, 공개 과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해나 착각에 의해서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지나치며,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심리적, 사회적 요인

특정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일 수 있다. 한, 두 가지 개인 신상정보만 알면 누구나 쉽게 특정인의 신상을 알아낼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누가 빨리 찾아내는가, 누가 빨리 신상정보를 올리느냐가 실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왜 그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개인의 욕구를 해소한다. 여기에 ‘범죄자, 혹은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의 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필요 없이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합해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일을 행한 것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된다. 이러한 그릇된 공명심은 자신의 일이 마치 국가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다(이승준, 2011).

왜곡된 공명심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체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다(경향닷컴, 2012. 9. 13). 즉, 이 사회와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에서, 스스로 ‘정의’를 찾겠다는 욕구가 발현된다는 것이다. 2011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보인권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유가 제시되었는데, 기조발제를 한 서울대학교 서이중 사회학과 교수는 사

회를 감시하고 정의를 실현해야할 공권력과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러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분명 인터넷 시대의 부작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시민들의 주체적 의식과 행동은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던 만큼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재단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경향닷컴, 2011. 6. 29).

한편, 앞서 소셜미디어 관련 개인 신상정보 노출과 피해사례들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과 유포는 대부분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승준(2011)은 이러한 경향이 이른바 ‘△△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우선 여성에게 개인 신상정보 노출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여성에 대해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관음증적 행태인데, 여성이 대상일 경우 대개 네티즌들에 의한 성적 비하 발언이나 모욕적 언사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故)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 사건의 경우도 모 프로야구 구단 선수와 연관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루머들이 인터넷을 도배하다시피 했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네티즌들에 의해 피해자들의 성적 일탈이나 사건의 선정성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인격적인 비하로 이어질 수 있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인터넷상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폭력, 또는 테러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IV. 언론에 의한 소셜미디어 내용의 전파와 그 영향

앞서 예를 든 개인 신상정보 노출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신상정보의 내용은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배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언

론의 비정상적인 취재 행태, 즉 구독수, 클릭수, 조회수, 시청률 등만을 고려한 언론의 선정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일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은 일반 인터넷 사이트와 다른 공공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성과 신뢰성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짜로 일어난 일로,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인 양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통 매체, 예를 들면 TV, 신문, 라디오 같은 매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뉴스를 전달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던 흥밋거리 이슈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이들 매체에 내보낼 경우 파급될 영향은 실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나 기타 사이트 게시판 등에 처음 올라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이후 주로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다뤄지는데,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성은 기존 전통적 미디어 이용자와 달리 미디어 이용에 있어 능동적인 성향을 가지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 내용이든 부정적 내용이든 상관없이, 능동적 네티즌들에 의한 온라인상의 뜨거운 관심은 결국 전통매체인 TV, 인쇄신문, 라디오 등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게 만들며, 대중매체의 막강한 메시지 전파로 인해 전국으로 파급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명되었던 관계, 즉 미디어가 설정하는 의제가 곧 공중의 의제가 된다는 의제설정이론(Agenda-Setting Theory)의 기본 설정이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첫 번째로는 수동적 수용자론을 기반하고 있던 전통적 의제설정이론을 능동적 수용자가 기반인 인터넷 환경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두 번째로는 최근의 공중의제는 전통적 미디어가 아닌 인터넷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짐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의제 설정이 전통적 미디어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그것이다.

1. 역 의제설정이론(Reverse-Agenda Setting Theory)의 설명

역 의제설정이론은 어떻게 인터넷 상에서 시작한 이슈가 인터넷 언론에 보도되고 TV나 신문과 같은 전통 매체로 확산되는지 설명하고 있다(김성태·이영환, 2006). 소셜미디어에서 처음 시작해 화제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거나 둘 모두의 경우에서 최초의 발화자는 한 개인(네티즌)이 될 것이다. 물론 범죄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기관의 공보에 의해 이슈가 초기 발화되고, 이후 인터넷 언론사에서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모두의 경우, 최초에는 그 이슈를 접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이슈를 초기 확산자들이 소위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이 이슈는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며, 인터넷 언론이 중요하게 보도하게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공중 의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역 의제설정이론 연구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의제 파급(Internet-mediated agenda ripping)이라고 명명했다. 초기 발화시부터 전통 매체가 이슈를 다룰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이슈를 초기부터 중요 이슈로 우선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역 의제설정이론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여론의 형성과 주요 의제의 설정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의제는 이제 전통 매체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고, 또한 인터넷에서 부각된 의제는 전통 매체를 통하면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확산되는 예들을 보건대, 이제는 더 이상 전통 매체만이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의제가 기존 미디어의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인터넷을 통한 역 의제설정으로 명명했다(김성태·이영환, 2006). 이 연구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2012년 현재가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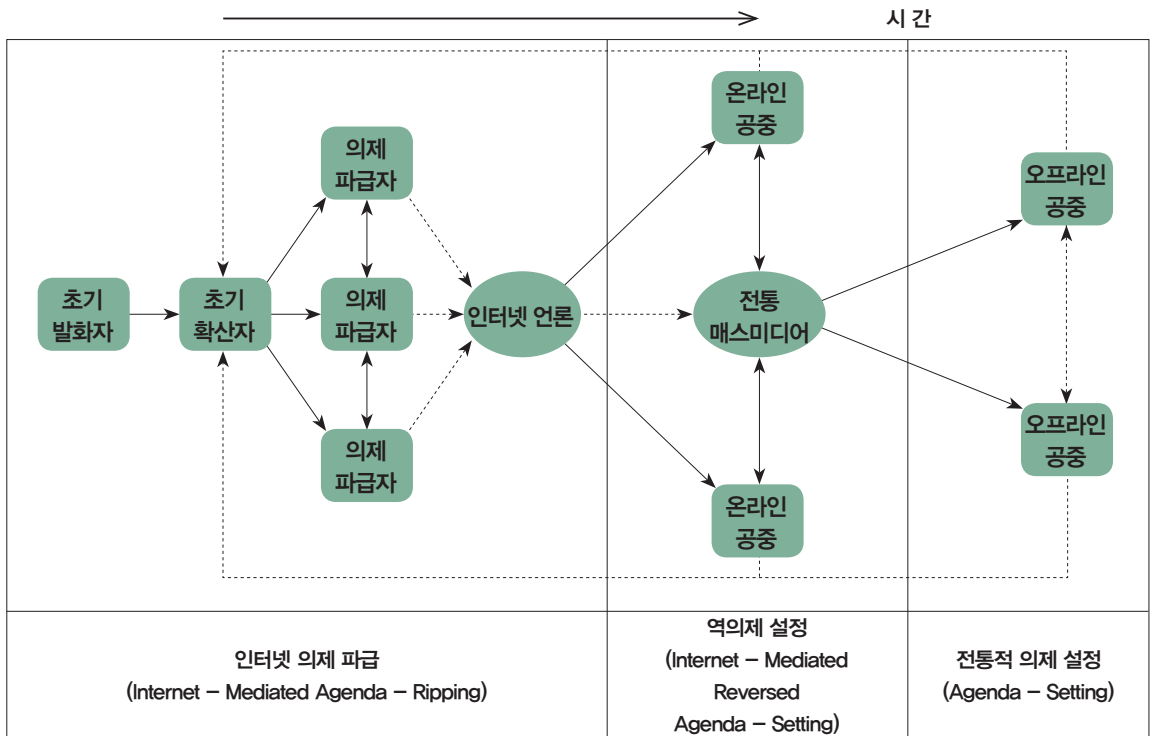
이용자도 더 많고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터넷상의 공중 의제가 곧 우리 사회의 공중 의제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은 더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 신상정보 노출 피해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터넷에서 발화된 이슈들은 모두 오프라인에서 공중 의제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역 의제설정이론을 주장하면서 집단에 의한, 여러 사람들에 의한 콘텐츠 형성을 일컫는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개념과 인터넷 의제를 연결시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기반으로 하는 집단 지성의 인터넷 환경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통의 해결책을 찾고, 이후 계속 진화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인터넷 공중 의제 형성의 과정은 어느 특정 이슈가 네티즌의 참여로 인해 확산될 때 집단 지성이 형성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지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집단 지성에 참여하는 대중들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역 의제설정과 집단 지성의 결합이 나타내는 순기능에 대한 연구자들의 설명은 하나의 가능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집단 지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 가지 측면의 관점이 충돌하는데, 각 개인들의 개별 능력들이 합, 즉 집단의 능력은 개인들의 능력을 상회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중의 지혜를 신뢰하는 측면에서 집단 지성을 지지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 대중은 불완전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지혜의 창출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집단 지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다(임순미, 2010).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과 피해의 측면에서 볼 때 집단 지성이 발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집단 지성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그림] 인터넷이 매개된 공중 의제 설정 모델



*출처: 김성태 · 이영환 (2006). p.197.

있는데(양미경, 2010), 사례를 통해 나타난 의제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상호작용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며, 다양성을 인정했다면 불필요한 인신공격이 난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너지는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앞다퉀 ‘신상털기’를 하는 ‘집단적 시너지’가 나타났을 뿐이다.

즉,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과 역의제설정에 의한 이슈화 과정의 연계를 통해 확실해진 것은 아직도 우리의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과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의제 설정은 확인의 과정을 분명히 거쳐야 할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통 매체의 보도 행태가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정보수집 채널로서의 소셜미디어와 그 문제점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 언론보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현재 언론들이 소셜미디어를 정보수집의 채널로 이용하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예전 신문사나 방송사 기자들의 경우 정부 주요 부처나 산하기관, 병원, 경찰서 등에 상주하면서 기사를 위한 정보를 얻었다고 한다면 현재 언론사 기자들의 주요 정보원은 인터넷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어 주요 언론에 기사화된 사례는 매우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의 체포 소식을 주류 언론보다 몇 시간 앞서 알린 것은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생의 트위터였고, 오사마 빈 라덴 사망 역시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보좌관이 트위터에 올린 발언으로부터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의혹, 신라호텔 한복 출입 금지 논란 등은 트위터에 관련 사실이 공개되어 장관이 사퇴하고 신라호텔은 공개 사과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다(김사승, 2011).

앞서 언급한 바대로, 개인 신상정보를 파헤쳐 공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부나 언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즉 자신들을 일종의 ‘독립미디어’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들이 저널리즘의 형태를 갖는 경우를 일컫는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정의를 보면 이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개념은 최근에 나타난 개념으로 그 정의가 아직 확실하고 고정되지 않았지만, 광의적 접근으로 “...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형 미디어를 기반으로 비전문직 일반시민과 전문적 언론인들이 함께 뉴스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피드백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장병희, 2011). 상호작용과 집단 사고를 통해 콘텐츠를 형성하는 과정은 마치 집단 지성의 정의와 많이 닮아 있는데, ‘신상털기’의 경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점이 없고 뉴스적 가치를 지닌 콘텐츠의 생산, 유통, 소비, 피드백에 관여는 할 수 있으나 전문 언론인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네티즌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언론보도식 증계가 뉴스의 전달과 닮아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장병희, 2011). 우선 대표적인 것이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이다.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전통 매체와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당장 얻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언론사에 있는 게이트키퍼(gate keeping)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김사승, 2011). 소셜미디어로부터의 정보를 가지고 보도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난, 즉 오보로 판명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러한 사례가 쌓이면 쌓일수록 소셜미디어에서 제시되는 뉴스는 일종의 루머로 치부되기 쉽게 되며,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논란의 여지는 보도의 기본이 되는 객관성의 문제다. 전문 언론사들도 일정 정도의 당파성과 지

역색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저널리스트로서 전문 교육도 받지 않았고, 보도와 관련한 윤리도 교육받은 바 없는 일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뉴스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 신상정보의 무차별 폭로는 그 개인에 대한 감정을 콘트롤 하지 못해 발생한, 즉 객관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애초부터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논란은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이다.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는 덜하겠지만, 분석기사나 그 밖에 특정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뉴스의 경우 일반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논란은 소셜미디어 상의 내용이 게이트 키퍼 없이 일단 나가고 난 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더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집단 지성을 활용할 경우 보완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네 번째 논란은 정보의 다양성과 관련한 것인데, 인터넷상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소셜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정보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이 더 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셜미디어의 정보가 의외로 다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논란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과잉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곳이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쓸 만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이는 이용자들의 정보 탐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여섯 번째 논란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경향에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간지들과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를 신뢰하지 않거나 특정 매체만 신뢰하는 극단적인 뉴스매체 신뢰 경향이 나타나는데, 전통 매체의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셜미디어에 기대는 이용자들이 맹목적으로 정보를 믿게 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호감에 따라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파워 트위터 리안’으로 불리는 일부 유명인들이 쏟아내는 출처 불명, 혹은 매우 감정적 언사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사실로 맹신해 버릴 경우 타인의 의견에 귀를 닫고 집단을 형성, 주변 사람을 압박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의 기본 성향이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로, 전통 매체의 경우 콘텐츠의 형식, 구조, 의미전달에 있어 표준화되어 있으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보내는 정보의 형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덟 번째로, 과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이 기존 미디어와 대등하게 겨루며 차별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즉, 같은 이슈라도 기존 미디어와 차별되는 관점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퓨(Pew)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뉴스를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60~65%로 소셜미디어나 포털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는 비율 35~40%를 상회했다(김사승, 2011). 즉 소셜미디어나 포털은 아직 ‘참고 사이트’로 뉴스소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다르고,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셜미디어는 정보제공에 있어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주요 매체의 보도에 대한 요약, 품평, 반론 등의 형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 소셜미디어 상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제언

소셜미디어가 개인 신상정보 노출과 관련해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소셜미디어가 가진 본원적 특성, 즉 개인 신상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인맥을 쌓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상털기’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개인 신상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조성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자칫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향창(2011)이 제시한 소셜미디어 환경을 위한 프라이버시 원칙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은 정보수집제한 원칙,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 제한의 원칙, 안전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장규원과 윤현석(2011)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관리기준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관리에 관심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가 소셜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개선점이 제안되고 있다(오태원·유지연, 2011).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관련 현행 법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법제의 기본이 개인정보 제공자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의 경우 개인 신상정보 제공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서라기보다 (물론 가입할 때 일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법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때, 이 이용자들이 법제상의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를 갖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시점은 타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때 시점이라 볼 수 있어서 기존의 법제에서 요구하는 절차, 즉 고지와 동의라는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개선점으로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소셜미디어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을 삽입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타 미디어 환경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안이 세계적으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화와 관련한 또 한가지 의견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법제화 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개인 동의하에 제공된 정보와 기사,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터넷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수 없다는 기술적 한계와 표현의 자유문제 등이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논의 중에 있는 이슈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고,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가 무제한으로 남용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역사의 기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후손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정보를 폐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시민단체 등 사회감시 기구들이 정보를 얻기 어려워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2012. 4. 15). 따라서 아직 법제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 신상정보의 노출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중 하나는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시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상당수 ‘신상털기’가 이들 기관의 공보행위 시 제공된 보도자료에서 출발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까지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보강이 필요하다(이승준, 2011).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의 금지만 규정하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

령, 직업, 성별, 가족 유무, 범죄의 종류, 수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만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겠다. 또한 이승준(2011)은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로 이러한 '신상털기'의 경우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데 처벌 시 형사절차 진행의 공포감과 배상금, 합의금 마련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내려지고 있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전과자 양산 방지와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와 기자들의 기본적인 보도 윤리의 준수다. 속보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나,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등에 초점을 맞춰 기본적인 사실 및 인과관계 확인과 주변 정황에 대한 취재가 꼭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기사 송고 전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닷컴 (2011.06.29.). 인터넷 신상털기, 공권력·기성언론 불신에서 비롯.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92006361&code=940100
- 경향닷컴 (2012.09.13.). 신상털기는 과시욕·사회체제 불신이 낳은 '스트레스 배출구'.
Availabl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32132365&code=940202
- 김사승 (2011). 소셜저널리즘의 의미와 저널리즘 지형의 변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자료.
- 김성태, 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 파급(Agenda-Ripping)과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3호, 175~204.
- 노컷뉴스 (2012.12.07.). 고교생 집단 윤간, 여성단체 “인권없는 마녀사냥식 보도.”
Available: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35948>
- 라이프투데이 (2012.03.02.). 채선당 임신부 폭행녀-국물녀, 마녀사냥 어디까지?
Available: <http://www.life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0>
- 미디어스 (2011.5.23.). 송지선 자살보도, '자살보도 권고 기준' 무시하는 언론.
Available: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09>
- 미디어오늘 (2011.05.25.). 고 송지선 아나운서 “기자들의 먹잇감 될 줄은...”
Available: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16>
- 양미경 (2010). 집단지성의 특성 및 기제와 교육적 시사점의 탐색. 「열린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1~30.
- 오태원, 유지연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제4호, 26~42.
- 이승준 (2011). 인터넷상의 무단 개인정보 탐지 및 공개행위(이른바 '사이버 킬')와 수사기관의 공報에 대한 小考. 「형사정책연구」, 제22권

1호, 85~109.

- 임순미 (2010).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 대한 언론 프레이밍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3권 제2호, 161~189.
- 장규원, 윤현석 (2011).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105~137.
- 장병희 (2011). 뉴스 생산과정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 취재 및 유통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네트워크 저널 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자료.
- 조선닷컴 (2012.02.20.) 채선당 사건, 인터넷 용단 폭격... 썰렁해진 식당.
Availabl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0/2012022000095.html
- 최향창 (2011).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접근통제 연구. 『Internal and Information Security』, 제2권 제1호, 161~189.
- Brin, D. (1998). *The transparent society*: New York, NY: Quill/William Morrow.
- Cialdini, B. (1993). *Influence: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New York, NY: Addison-Wesley.